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19 - 110 |
|----------|---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9. 9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정이유

우리 구가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홍보물심의위원회(안 제3조~제7조)
- 다. 회의 운영 등(안 제8조~제12조)
- 라. 홍보물의 판매 및 보급(안 제13조~제19조)
- 마. 시행규칙(안 제20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없음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기타사항
  - 1) 입법예고 : 2019. 7. 25. ~ 8. 14. (제출된 의견 없음)
  - 2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해당없음
  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  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  - 5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제작하는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홍보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홍보물”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및 소속 행정기관(이하 “발행부서”라 한다)에서 대내외 홍보 또는 배부를 목적으로 제작하는 간행물, 영상물, 책자, 팸플릿, 포스터, 스티커, CD, 음원, TV 및 신문 광고 등을 말한다.

### 제2장 홍보물심의위원회

**제3조(설치)** 홍보물의 제작 및 판매·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**제4조(구성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, 보건소장, 홍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5조(기능)**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, 유사·중복 발간하는 홍보물의 통·폐합 및 조정  
에 관한 사항
2. 홍보물의 판매여부·판매방법 및 판매가격
3. 홍보물의 발행부수·배포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홍보물 발간·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

**제6조(사전심의)** 발행부서는 홍보물 제작 30일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사항을 제출하여 홍보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물 심의에서 제외한다.

1. 「보안업무규정」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
2. 「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 
및 업무편람
3. 법령에 따라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 
홍보물
4. 최초 발간 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홍보물
5. 제작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홍보물
6.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홍보물

**제7조(심의 생략)** 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홍보물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중앙부처 및 상급기관의 협조사항 중 홍보물 제작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
2.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자료보존·구민홍보를 위하여 긴급히 제작해야 하는 홍보물

② 제1항에 따라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제6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 다만, 심의가 생략된 홍보물은 간사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.

### **제3장 회의 운영 등**

**제8조(회의)**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9조(간사 및 서기)**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
② 간사는 언론팀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.

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, 별지 제2호서식의 홍보물 심의 대장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의견청취 등)**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·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·의견진술 등을 발행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, 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.

**제11조(수당 등)**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0조제1항의 의견청취에 참석한 관계전문가·구민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 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.

**제12조(심의결과 통보 등)** ① 위원회는 발행부서의 장 및 회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, 발행부서의 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홍보물을 제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③ 회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결과 부결된 홍보물에 대한 회계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.

#### **제4장 홍보물의 판매 및 보급**

**제13조(판매가격)** 위원회는 홍보물 제작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등을 고려하

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. 다만, 위원회는 홍보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4조(판매방법 등)** ① 위원회에서 판매·보급하기로 결정된 홍보물은 직접 판매하거나,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지정하는 판매업자(이하 "판매업자"라 한다)에게 위탁판매할 수 있다.

② 홍보물을 직접 판매하려는 부서의 장(이하 "판매부서의 장"이라 한다)은 판매소 설치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, 그 판매장소는 위원회에서 정한다.

③ 판매업자가 홍보물을 위탁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하되, 판매가격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.

**제15조(판매업자 지정)** 제14조에 따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16조(판매대금의 납부 등)** ① 판매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그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부해야 하며,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홍보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판매업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8호서식의 홍보물 판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,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판매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고지서에

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 금고로 납부해야 한다.

**제17조(홍보물의 재고처리)** ①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홍보물을 판매·보급한지 1년 이상이 지나도 판매되지 않는 홍보물에 대하여 발행부서의 장에게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반품 요청에 따라 처리한 발행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홍보물 재고 처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8조(전시·홍보 등)** ① 판매부서의 장 또는 판매업자는 위원회에서 판매·보급하기로 결정한 홍보물을 일반인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전시·홍보하여야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조정을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민 또는 구를 방문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.

**제19조(관리·감독)** ① 홍보과장은 홍보물의 판매·보급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.

② 발행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·보급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며,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홍보물을 판매·보급하는 판매업자를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제2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### 3. 미첨부 사유

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# 4. 작성자 : 행정관리국 홍보과 권하나 (☎ 3153-8292)

<별지 제1호서식>

## 홍 보 물 심 의 요 구 서

문서번호 : 20 . .

수 신 :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

참 조 : 홍보과장 발신 :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
| 제작물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제작목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제작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형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규격 :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재질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색도 :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면수 :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량 :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요예산 : 천원<br><br>(원고료: 천원,<br>기획·편집료 : 천원,<br>인쇄비 : 천원,<br>기타 : 천원) |          |  |
|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보급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유상보급 : 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상보급 : 부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판매 희망가격 :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판매 개시시기 : 20 . . 부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| 첨부 :<br>1. 홍보물 시안 1부<br>2. 발간개요 1부<br>3. 배 부 처 1부<br>4. 소요예산 산출명세 1부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|

〈별지 제2호서식〉

## 홍보물심의대장

[illegible]

<별지 제3호서식>

## 홍 보 물 심 의 결 과 통 보 서

심의번호 :

심의일자 : 20 . . .

수 신 : 심의요청부서, 회계부서

| 건 명     | 심의요청 부서명 및 제작물 명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심 의 결 과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결 정 사 항 | <p>○ 제작내용 :</p> <p>○ 판매가격 : 천원</p> <p>○ 판매부수 : 부</p> |
| 비 고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<별지 제4호서식>

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

처리기간 : 10일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|
| 신 청 인<br>(대표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성 명         |            | 생년월일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전화번호 |     |
| 판매소<br>현 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상 호 명       |         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또는 생년월일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소 재 지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사업장면적       |            | 개 업 일 자       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이용고객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평균<br>이용객수 | 약        명 | 월 휴무일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홍보물<br>판매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<p>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홍보물 판매업자지정을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인 (인)</p> <p>마포구청장 귀하</p>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|
| 구비서류 : 사업장 소재지 약도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수수료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 없 음 |

<별지 제5호서식>

## 판매소 관리대장

홍보물명 :

판매금액 : 원 위탁판매 수수료 : 원 수납금액 : 원

[illegible]

〈별지 제6호서식〉

## 직접판매 관리대장

홍보물명 :

[illegible]

<별지 제7호서식>

#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마포구청장

참 조 홍보과장

제 목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

(            ) 월의 홍보물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.

발 신: 판매부서의 장

[illegible]

\* 홍보물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



##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서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마포구청장

발신 : 판매업자 ○○○

참 조 홍보과장

제 목 홍보물 판매실적 보고

마포구 홍보물의 ( )월 판매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오니 세입고지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### 1. 세입의뢰 내역

- 총 판매액 금 원정(W )
- 판매수수료 금 원정(W )
- 세입의뢰액 금 원정(W )

### 2. ( )월중 홍보물 판매내역

| 홍보물명 | 홍보물 현황               |    | 판매단가 | 판 매 현 황 |     |     |     | 재고량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|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 | 금월 입고량               | 누계 |      | 금월 판매량  |     | 누 계 |     |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부수      | 판매액 | 부수  | 판매액 |     |
| 계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| 홍보물  | 종류가 많을 경우 내역서는 별지 작성 |    |      |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|

판매자 ○○○ (인)

<별지 제9호서식>

# 홍보물 재고처리 결과보고서

문서번호

시행일자

수 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홍보물심의위원회 위원장 발 신 발행부서의 장

참 조 홍보과장

제 목           홍보물 재고처리(유상판매 분) 결과보고

[illegible]